붙임 **과업지시서**

용 역 명 : 2027년도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 소방시설 위탁점검용역

용역기간 :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 일반과업지시서

제1조(목적)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에 설치된 모든 소방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하여 불량 시설에 대해 시정 조치함으로서 화재 시 초기진압 대처능력 향상과 효율적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인명 및 국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제2조(과업내용 및 적용범위)

2.1 점검종류 :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한 소방시설 월간점검, 종합점검 및 작동점검 등

2.2 주요업무

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를 위한 정기 점검 업무

나. 소방시설 정상적 유지관리에 필요하여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이 요청하는 제반업무 등

제3조(용역기간 및 점검일정)

3.1 용역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종합정밀점검 및 작동기능점검은 점검 완료 후 7일 이내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에 2부(관할소방서 제출용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점검결과 보고서는 전 과정(준비, 점검과정 등)의 작업광경을 사진 (각2부)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단, 소방관련법의 개정으로 인한 과업수행 일정 및 횟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 계획에 따라야 한다.

3.2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의 휴관일인 일요일을 제외하여 점검하며, 복

지관의 일정을 최우선으로 한다.

3.3 현장점검 및 진단일정 : 1일(종합점검 및 작동점검)/ 1일(월간점검)

3.4 월간점검의 점검표는 복지관 자체점검표에 따름(소화기 점검표지 표기 포함)

점검명	비고
종합점검	11월
작동점검	6월
월간점검	1월~12월

제4조(인원투입 및 대금지급)

4.1 계약자는 용역수행계획서(투입인원, 점검계획, 자격증 사본 등)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승인 요청하여야 한다.

4.2 최소 진단인원

가. 종합점검(11월), 작동점검(6월)

- 현장대리인(소방시설관리사) 1인, 중급 기술자 1인, 초급기술자 2인

나. 월간점검: 1월~12월

- 중급 기술자 1인, 초급기술자 1인

4.3 보고서 제출 : 소방점검 완료 후 7일 이내(2부 제출)
월간점검 완료 후 1일 이내

제5조(계약자의 책임과 의무)

5.1 계약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 및 이에 대한 해소 방안 등을 감독자에게 건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5.2 본 점검 시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점검 중에 계약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발생되는 제반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하여는 계약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5.3 계약자는 소방시설 자체점검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과업수행 인원의 안전에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안전교육 및 점검자의 건강관리 등 제반 안전관련 규정상의 이행사항과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5.4 감독자는 계약자의 과업수행에 관한 제반 감독권을 가지며, 계약자는 감독자의 요청사항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가진다.

5.5 계약자는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이에 따른 사고 수습 및 보상에 전적인 책임을 갖고 이행해야 한다.

5.6 감독자는 계약자의 용역업무 수행을 감독함에 있어 진행사항 또는 자료를 계약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5.7 계약자 및 계약자의 대리인이나 고용인이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국립항공박물관 구성원 또는 제3자에게 인적, 물적 피해(손상, 부상, 사망, 도난 및 손실로 인한 직.간접비용 등)를 끼쳤을 때에는 계약자는 그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제6조(보험의 가입) 계약자는 본 용역과 관련 산업재해보상보험에 필히 가입하고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위반행위의 조치) 계약자는 운영상 과실로 복지관 소유의 시설물에 막대한 차질을 발생시키거나, 작업절차 및 규정 미이행,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 등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용역수행관련 보고 및 조치사항) 본 점검용역으로 지적되어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요청 시 필요한 조치(의견서 제출, 현장조치 및 확인 등)에 임하여야 한다.

제9조(보고서 작성)

9.1 계약자는 보고서 작성에 대하여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 양식으로 작성을 하고 구비서류로서 소방시설점검표를 첨부하여 작성한다.

9.2 정기점검은 점검 후 감독자에게 점검결과를 공문으로 제출한다.

9.3 종합정밀점검 및 작동기능점검은 연1회 이상 소방시설 종합점검표에 의한 점검 후 점검결과보고서를 감독자에게 공문으로 제출한다.

2. 특별과업지시서

Ⅰ.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용역은 과업대상의 소방설비(소화설비, 경보설비, 소화활동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등)의 전반에 대한 정밀소방점검 및 소방점검에 적용한다, 소방시설물의 점검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적용되지 아니하며 다른 시설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시설의 법령과 기술기준에 따른다.

2. 용역시행

계약자는 용역 시행 전 소방시설의 계통을 숙지한 후 용역을 시행함은 물론 지상, 지하의 기존 시설물을 검토하여 시설물에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공통사항

가. 소방설비의 분해 조립 시는 항상 유지관리지침서에 의하여 작업한다.
나. 언급되지 않은 모든 사항은 소방관련법령에 의거 수행한다.

4. 용어의 정의

가. 정기점검 : 점검 후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나. 작동기능점검 : 연1회 이상 소방시설 종합점검표에 의한 점검 후 점검 결과보고서를 “발주자”와 관할소방서장에게 제출.
다. 정밀소방점검 : 연1회 이상 소방시설 종합점검표에 의한 점검 후 점검 결과보고서를 “발주자”와 관할소방서장에게 제출.

5. 점검범위

가. 소화설비
나. 경보설비
다. 피난설비
라. 소화용수설비
마. 소화활동설비
바. 기타설비

6. 소방시설점검에 관한 법령

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다. 국가화재안전기준
라.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마. 소방시설자체점검 업무처리규정
바. 소방시설 점검 특별시방서
사. 건축법 등 관계 법령
아. 전기설비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자. 기타 관련 법령

7. 예정일정표 및 서류제출

가. 점검자는 점검시행 전 감독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예정일정표 및 점검업무 참여자 명단과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나. 예정일정표의 작성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가능한 일상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성한다.

8. 보고서 작성 제출

가. 점검완료 후 점검자는 점검결과 및 대책을 시설별로 분류 작성하여 감독자(소방안전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종합정밀점검 및 작동기능점검을 완료한 점검자는 7일 이내에 법령에서 정한 점검서식에 의한 점검결과보고서를 감독자(소방안전관리자)에게 제출한다.

Ⅱ. 소방시설의 점검

1. 공통사항

가. 점검은 소방시설관리사의 책임하에 시행하되, 보조인력은 반드시 등록된 소방설비기사 및 소방시설기능사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소방시설관리사는 점검기간 동안 보조인력을 지위, 감독하여 점검을 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는 점검자에게 소방시설의 설계도서, 소방시설현황 등을 제공하여 효율적인 점검이 되도록 한다,
다. 점검은 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하며, 감독자는 시설의 점검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라. 소방시설 점검 시 소리가 나는 시설 또는 일상업무에 지장을 주는 시설은

감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실시한다.

마. 점검자는 취급부주의로 시설에 손해를 끼친 경우 점검자의 책임하에 원상복구 한다.

2. 점검장비

소방시설별 점검은 아래표에 의한 기구를 참고하여 실시한다.

설 비 별	점 검 기 구 명	규 격
소화기구	소화기고정틀, 저울, 내부조명기, 반사경 메스실린더 또는 비이커, 스패너, 가압용기스패너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소화전밸브압력계,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자동화재탐지설비	열감지기시험기, 연기감지기시험기, 절연저항계, 공기주입시험기, 전류전압측정계	
무선통신보조설비	무전기, 전류전압측정계	
유도 등 설비	조도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3. 공통설비

점검자는 다음사항을 착안하여 설비별 유기적 기능상태를 점검한다,

가. 수원

- 유효수량, 특히 타 설비와 겸용 시 유효수량 확보
- 점검의 편의성, 수위확인조치, 조명설비
- 동결방지조치, 배수관, 소화용도표지판 설치등

나. 감시제어반

- 작동여부 확인 표시 등 및 음향경보기능, 저수위경보
- 비상전원으로 자동전환기능 및 공급전원의 확인기능, 예비전원적합 여부 판단가능
- 확인회로의 도통시험 및 작동 시험
- 제어반의 설치위치 적합성, 비상조명, 급·배기시설 등의 작동시험

다. 동력제어반

- 설치위치의 적합성 및 표지부탁
- 전원스위치, 자동.수동 스위치, 기동.정비표시등, 휴즈 등의 상태

4. 소화설비

가. 소화기(분말, 이산화탄소, 할론가스 등)

- 약제량, 수분함유
- 카트리지(가압식소화기), 압력계(축압식소화기)
- 능력단위, 설치위치, 봉인
- 관리카드 기록여부

나. 옥내.외 소화전

- 소화전함의 규격 및 재질
- 방수구, 소방호스, 관찬유무
- 송수구, 표시등 상태
- 소방펌프의 자동.수동 기동 및 전원공급상태

다. 소방펌프

- 압력챔버의 설정압력
- 충압펌프, 주펌프의 기동상태
- 방수압력 및 유량측정
- 부속배관 및 Fitting류의 누수상태

5. 경보설비

가. 자동화재탐지설비

- 화재수신반의 설치위치, 음향기구, 경계구역표시, 작동경계구역표시
- 전원의 과전류 차단기, 상용 및 예비전원의 시험
- 화재감지기의 적응성 작동시험
- 발신기 SET 동작상태

나. 비상경보 및 비상방송설비

- 방송설비의 설치위치
- 화재탐지설비와의 연동상태 및 방화층 우선경보방식

6. 피난설비

가. 유도등, 유도표지 및 비상조명등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별 적응성
- 설치위치, 크기, 조명도, 조도

- 예비전원, 예비전원충전상태

나. 피난기구

- 설치위치 및 표지
- 피난기구의 현장비치 및 사용설명서 부착

7. 소화용수설비

가. 상수도소화전설비

- 설치위치
- 배관구경, 제수변, 표지

나. 소화수조

- 채수구 및 표지
- 소화용수 펌프의 기동
- 소화용수의 유량확인 및 수질상태

8. 소화활동설비

가. 연결송수관설비

- 송수구, 방수구의 설치위치, 위치표시
- 배관구경
- 방수용기구함 및 위치표시등

나. 무선통신보조설비

- 접속단자, 분배기, 증폭기, 동축케이블 또는 공중선의 설치위치
- 임피던스 매칭, 종단저항
- 단자 보호함 및 표지설치

다. 제연설비

- 급기 그릴 동작상태
- 화재감지기와의 연동으로 급.배기팬의 동작상태 및 풍량

9. 기타설비

가. 연소확대방지설비

- 주유 구조부의 내화성능
- 방화구획(면적별, 층별, 용도별)
- 방화문, 방화셔터의 자동.수동 작동

나. 방염

- 커텐, 카페트 등의 방염
- 방염표지

Ⅲ. 용역수행방식

1. 소방시설관리대행 방식

가. 점검은 소방시설관리사의 책임하에 시행하되, 보조인력을 반드시 등록된 소방설비기사에 의해 전문 점검요원이 전체 소방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실시 및 불량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정비하여 소방시설이 항상 양호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한다.

나. 점검자는 점검업무 시행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점검업무 중 발생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처리는 점검자의 책임하에 조치하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다. 종합정밀점검 및 작동기능점검을 연 2회 수행하여야 하며, 점검완료 후 7일 이내에 감독자에게 점검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업무 세부내역

가. 소방시설관리사 책임하에 소방설비기사 등 법적 점검보조자가 점검을 실시하며 박물관내 소방시설 중 불량개소에 대하여는 즉시 보수할 수 있도록 보고한다.

나. 소방시설별 점검기구를 사용하여 점검 및 보수를 한다.

다. 법적점검대상은 정밀소방점검 및 작동기능점검 실시 후 7일 이내에 소방시설점검결과 보고서를 점검표를 첨부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라. 당해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계획서 작성 및 소방교육 실시에 적극 협조한다.

마. 소방시설 점검, 유지관리 및 방화업무에 대한 소방관서의 행정명령 수행을 위한 기술력 제공 또는 자문에 응한다.

바. 소방관서 대관업무 수행시 적극 지원한다.

사. 점검결과는 소방시설 자체점검기록부에 의한다.

아. 소방시설 점검결과는 관련법령에 따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